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64호 2015. 7. 31.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36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정선군 조례 제2437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438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439호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440호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17
- 정선군 조례 제2441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55호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23
- 정선군 규칙 제1256호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6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6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영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 ② 제24조제4호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부과하는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u>10일간</u>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1개월간----- -----.</p> <p>④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는 숨은 규제 사례 중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완화(안 제24조제4호)
 - 납세자가 재해, 도난, 질병으로 위독, 상중,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예외 사유 추가.
- 군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안 제39조제3항)
 - 체납처분 중지 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연장.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7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의 시행 후 2017년도까지의 주민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1. 2015년도: 7,000원
- 2. 2016년도: 8,000원
- 3. 2017년도: 9,000원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 분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율) ----- ----- -----.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 <u>5,000원</u>	1.----- <u>10,000원</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주민세(개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1999년도부터 5천원을 과세하고 있음.
- 정부에서 주민세 1만원 미만 시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penalty)를 강화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와 균면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율 인상(안 제6조제1호)
 - 세율: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 ※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칙 적용례 규정에 2015년도는 7,000원, 2016년도 8,000원, 2017년도 9,000원으로 연차적 세율을 적용함.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8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정선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수탁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보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9.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일)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비 고
		평 일	주말, 공휴일		
캠핑캐라반	4인용	70,000	120,000	120,000	자가용캐라반 사용 시 노지사용료 징수
야영장	데크 사용료	20,000	30,000	30,000	노지에 설치 시 10,000원 징수

<비고>

1. 성수기 : 7월 ~ 8월
2.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사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4. 초과사용료(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제4조에 의한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별표 3]

사용자 준수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 사용료는 선불입니다.
3.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음식쓰레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시설사용권(제6조제2항 관련)

제 - 호	제 - 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사 용 권(원부)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용 료 : (금 원) 절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년 월 일 직인	년 월 일 직인

- 전면 : 캠핑장 전경 도안 또는 정선군 주요관광지 등의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캠핑장내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개 정 이 유

-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15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동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시설물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방법으로 규정(안 제4조)
- 시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사용료 게시 규정
(안 제6조~제9조)
- 시설 사용의 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안 제10조~제13조)
- 위탁계약, 수탁운영자의 의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조항 등
(안 제14조~제18조)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39호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아 정규직 신규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체로 한다.

1. 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인 업체
 2.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으며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3. 청·장년 5명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
-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처리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 ② 대상기업은 고용대상자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할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월 이내 퇴직한 때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은 그 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대상기업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필요 경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일자리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대상기업',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및 예산집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보조금 분담 효율 등을 명시함(안 제9조)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0호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제223회 정선군의회(2015. 7.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41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p>「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 ~ 1/500 도면)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
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
(標識)를 할 것
-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
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
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
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
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
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
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중복조항의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중수도 설치신고 등 관련조문 삭제(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일부 개정 (별지 제1호서식)

규 칙

2015년도 제6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55호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군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보통징수(이하

“보통징수”라 한다)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균등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표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 공부를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해마다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

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 23 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부서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 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정선군 군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접수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1조에 따라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7호서식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해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 공부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제34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성명 (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읍·면)

접수일 (서식의 통일)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담당	과장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읍·면)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신고일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일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0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1.0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07.>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07.>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07.>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1.07.>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1.07.>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07.>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div data-bbox="218 1854 502 1895" data-label="Text"><p>2mm 그래프용지 사용</p></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 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년도	주택 연면적	비고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일 :			
공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현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연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 전 일						
이전사유						
조사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

년도		일분										(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 호	납세자 주소	과 표 세 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건물 면적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재 산 세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합 계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전화번호(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한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본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본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위 임 장

본인의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아래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접수증

신고인(대리인)	접수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세무과(전화 : 737-2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정선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공제액	납부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읍·면)

접수 번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리일	주행세 신 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	취발유	경유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읍·면)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재지)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57mm×364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선군 군세 조례」와 「정선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이 상호 불부합 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1장은 총칙으로 이 규칙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제2장은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징수방법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 제3장은 주민세 신고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 제12조)
-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처리 등을 규정
(안 제13조 ~ 제15조)
- 제5장은 재산세대장 정리와 분납 등을 규정(안 제16조 ~ 제19조)
- 제6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와 체납처분 등을 규정
(안 제20조 ~ 제27조)

2015년도 제6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기반 시설부담금특별 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56호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